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86호)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의무 면제 근거 법률상향〉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94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교통약자 접근성 고려〉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9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5
2.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의무 면제 근거 마련	11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교통약자 접근성 고려	18
IV . 참고자료	23
1. 해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	23

I . 제 안 경 위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안】

1. 제 안 자 : 김영배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2. 12.
3. 회 부 일 : 2025. 2. 13.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3. 13.
3. 회 부 일 : 2025. 3. 14.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27.
3. 회 부 일 : 2025. 3.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안】

현행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임.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목표인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 보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50% 통행료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

현행 법률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의무 면제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난 문제가 있으며, 면제 사유 또한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면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함으로써 현행 행정입법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인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 주유원을 통해 주유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충전기의 위치, 케이블 등 구조적인 이유와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충전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김영배의원안 제8조의3 신설)

개정안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는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①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같은 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70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8조의3</u> (생략)	<u>따라 지원할 수 있다.</u> 법률 제2070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8조의4</u> (현행 제8조의3과 같음)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기자동차는 77만 4,878대, 수소전기자동차는 3만 9,140대가 등록되어 전체 자동차 2,640만 8,276대 중 3.1%를 점유하고 있고,

2025년 상반기 중 휘발유 자동차가 26만 7,132대 신규등록되는 동안 전기자동차는 9만 634대, 수소전기자동차는 1,210대가 신규등록되어 휘발유차 대비 중 34.3%에 달하는 등 과거에 비해 높은 신규등록률을 보이고 있음.

[표 2] 전기차·수소차 누적등록대수 ('17~'24년)

(단위 : 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전기차	25,108	55,756	89,918	134,962	231,443	389,855	543,900	684,244	774,878
수소차	170	893	5,083	10,906	19,404	29,623	34,258	37,930	39,140
합계	25,278	56,649	95,001	145,868	250,847	419,478	578,158	722,174	814,018
전년대비 증감	-	124.1%p	67.7%p	53.5%[	72.0%p	67.2%p	37.8%p	24.9%p	12.7%p

*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및 수석전문위원실 분석

이에 개정안과 같이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여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50% 감면을 유지하게 직접 규정하는 경우 비용절감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의 구입을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기술개발, 연료생산 및 충전시설 등의 지원, 구매자 및 소유자 지원,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에 따른 통행료 부과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유료도로의 통행료 부과 및 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 「유료도로법」¹⁾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동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²⁾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1)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2)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9.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③제1항·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2의2. 통행료의 100분의 40: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3. 통행료의 100분의 30

나.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4. 통행료의 100분의 20

나.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⑥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

일정액의 통행료를 감면받아 왔음.

최초로 감면제도가 실시된 2017년에는 2020년까지 50%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이후 2차례 연장을 통해 24년까지 50% 감면 기한을 연장하였음.

다만, 2024년 12월 31일 3차연장에서는 통행료 감면을 2027년까지로 연장하되, 감면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2025년에는 40%, 2026년에는 30%, 2027년에는 2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상황임.

[표 3] 친환경자동차 감면제도 연혁

구분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대상
최초 (‘17.7.17.)	’17~’20		50%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u>전기자동차 및</u> <u>수소전기자동차*</u> 로서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u>전기자동차 및</u> <u>수소전기자동차 전용</u> <u>지급수단**</u> 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1차연장 (‘20.12.29.)	’21~’22		50%	
2차연장 (‘22.10.25)	’23~’24		50%	
3차연장 (‘24.12.31.)	’25~’27	’25	40%	
		’26	30%	
		’27	2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출처: 국토교통부

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유료도로법」은 도로이용료 감면의 정책적 필요성과 고속도로 운영 재원의 보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자동차 이외에도 각종 유공자와 장애인·경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제도를 운용 중임.

[표 4] 통행료 감면제도 현황

할인률	대상
100%	군작전용차량 / 구급·구호·소방차량 / 교통단속용차량 경찰작전용차량 / 도로건설·유지관리차량 / 긴급물류수송차량 국가유공자(1~5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 독립유공자
50%	국가유공자(6~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 / 경차 / 장애인
40%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50% / 30%	화물차심야할인(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적용)

* 출처: 한국도로교통공사 자료 및 수석전문위원실 재구성

개정안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에 대해 규율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 일반에 대한 통행료 부과와 감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유료도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통행료 관련 법령체계가 이원화되어 정부부처의 업무 소관 및 책임이 분산·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³⁾,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친환경자동차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료도로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료도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사항에 대하여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전체 통행료 감면 규모 및 한국도로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임.

국토교통부는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서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감면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등의 재무안전성 및 도로안전 관리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료도로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체계의 통일성이 훼손되는 등 통행료 감면 체계의 효율화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임.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인선의원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등)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⁴⁾,

동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및 제18조의7제3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⁵⁾.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개정안은 법률상 명확한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표 5]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생략) <u><신설></u>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대상시설의 구조적 특성이나 안전 관리의 위험 등으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⑨ (생략)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⑪ (생략)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 ⑥ -----제3항----- ----- ----- ----- -----. ⑦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⑪ ----- ----- -----제8항 및 제9항----- ----- ----- ----- -----.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⑬ 제12항----- ----- ----- -----.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 -----제11조의2제1항 및

현행	개정안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제3항-----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 ----- -----제11조의2제7항----- ----- -----.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10항--- ----- ----- -----. ② 제11조의2제8항 및 제9항----- ----- ----- ----- -----. ③ (현행과 같음)

법률에서 시행령 등으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시행령에서 면제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또는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⁶⁾,

법률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등 면제사유를 명시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 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임의적인 법규명령 개정을 방지하는 한편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에 부응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표 6] 현행 시행령 및 개정안 중 전용주차구역 등 면제요건

현행 동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동법 개정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좌동) 2. 그 밖에 해당 대상시설의 구조적 특성이나 안전 관리의 위험 등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우리 헌법의 지도이념인 법의 지배 내지 법치주의의 원리는 국가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그 주체와 방법 및 그 범위를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며 예외적으로 위임입법을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한 수권에 의거한 명령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것임을 요구하는 것”, 현재 1993. 5. 13. 92헌마80 등
 “모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하위명령이 규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고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 현재 1997. 4. 24. 95헌마273 등

또한 현행 동법 시행령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개정안에서는 “해당 대상시설의 구조적 특성이나 안전 관리의 위험 등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⁷⁾에도 부합하는 입법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제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시·도 조례에 면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시·도 조례에 위임하자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면제사유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들고 있는 것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외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철거 등이 예정되는 건물 등 국가적으로 종합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

7) 현재 2016.11.24. 2014헌가6.

에 위임하고, 이 후 대통령령에서 시·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최보윤의원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표 7]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 ----- ----- ----- ----- ----- ----- ----- ----- ----- ----- ----- ----- ----- ----- ----- <u>.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교통약자</u>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② ~ ⑫ (생략)	<u>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⑫ (현행과 같음)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운전자가 직접 충전함을 전제로 하여 제작·설치됨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에게는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게 할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현행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 및 이동수단 활용과 관련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버스운송사업자 준수사항⁸⁾, 도시철도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교통약자 전용구역 배정⁹⁾,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는 등¹⁰⁾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8] 장애인 교통 관련 법체계

구분	근거법	교통약자 관련 규정
노선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세버스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일반주차장	주차장법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	친환경자동차법	-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시설 활용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에 대해서만 진흥법인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로 환경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충전기 화면의 조작부 위치가 낮고 커넥터 무게를 줄인 교통약자용 급속충전 시설을 보급하기 시작하여 2022년부터는 급속충전시설 전량을 교통약자용으로 설치 중에 있음.

[표 9] 연도별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단위: 기)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2,061	1,500	1,188	1,164	412	345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27	60	130	1,164	412	345

주: 1. “전체”는 해당 연도에 정부가 신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 전체 수량이며, “교통약자 편의제공형”은 해당 연도에 정부가 신규 설치한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기의 수
 2. 2019년에 최초로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었으며, 2021년까지 일반형과 교통약자 편의제공형을 혼합발주하였고 2022년부터는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을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기본사양으로 반영하였음

자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사항은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에서 규정 중으로, 법적 통일성 등 측면에서 진흥법인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통약자 전용 충전구역 설치 의무화보다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용 충전시설의 자율적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64)과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51)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60

참고 1

해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

국가명	할인 등 혜택 내용
노르웨이	전기차에 대하여 도로 통행료 3.5톤 미만 차량 50~70% 할인 (단, 2024년부터 최저 30%로 할인율을 낮춤) 7개 도시에서 혼잡통행료 면제
독일	통행료(3.5톤 이상 차량에만 부과)를 전기차에 대하여 면제. 26년부터 75%로 할인율 축소 예정
일본	일본 고속도로 네트워크인 E-NEXCO Drive Plaza는 친환경차에 대하여 지역 등에 따라 다른 할인 요건을 적용하며,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권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 407ETR은 친환경차에 대하여 다인승 전용차선(High Occupancy Vehicle Lane) 이용 및 통행료 25~50% 할인
미국	주별로 다른 혜택 적용. 플로리다 195번 고속도로는 전기차에 대하여 무료 통행 허용. 조지아는 다인승전용차선 등 이용 가능. 뉴욕주는 그린 할인의 날에 고속도로 통행료 10% 할인. 캘리포니아 민자도로 91 Express Lane은 오후 4~6시를 제외하고 통행료 면제(특정구간에서는 50% 할인)
중국	성·자치구·직할시 경계 통과 시 친환경차에 대하여 요금 50% 할인
영국	전기차 전용도로 지정(런던)
오스트리아	기본적으로 10% 통행료 할인 및 버스전용차선 이용.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통행료 할인 제도 시행
프랑스	민간고속도로운영회사 VINCI Autoroute는 고속도로 통행 시 전기차 통행료 40% 할인
이탈리아	주요 민간고속도로에서 할인제도 없음

자료: 대한토목학회,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Vol. 44, No.5, 「민자도로의 통행료 할인 현황과 일몰형 통행차량의 보조금 지급 방안」(김지명, 임광균, 2024년 8월) 내용에 한국도로공사 자료(독일, 영국, 노르웨이) 추가 반영